

산학협력단 물품관리규정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

1. 개정사유

‘산학협력단 자산 미등재’ 관련 교육부 종합감사 후속조치로, 자산관리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제5조 조항 일부 수정

산학협력단 물품관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개정(안)작성	비 고
제5조(소모품)	제5조(소모품)	
<p>① 소모품은 일정기간 사용으로 그 원형이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및 다른 물품의 구성 부분으로 사용되는 부품 또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기구나 집기 중 개별 취득가액이 10만원 미만인 물품 부품류 및 시설물에 부착되는 설비물(방열기, 전기온수기, 화이트보드, 스크린, 게시판, 보안용 카메라 등) 사용상 이동이 빈번하거나 용이하여 자산관리에 무리가 있는 물품(마이크, 헤드셋, 선풍기, 보면대, 이동식 화이트보드, 가습기, 파티션, 영선용 공구, SSD, HDD 등) 소모성 시제품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기계기구나 집기로 분류하여 등재 및 관리하여야 한다.</p>	<p>① 소모품은 일정기간 사용으로 그 원형이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및 다른 물품의 구성 부분으로 사용되는 부품 또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기구나 집기 중 개별 취득가액이 10만원 미만인 물품 부품류 및 시설물에 부착되는 설비물(방열기, 전기온수기, 화이트보드, 스크린, 게시판, 보안용 카메라 등) 사용상 이동이 빈번하거나 용이하여 자산관리에 무리가 있는 물품(마이크, 헤드셋, 선풍기, 보면대, 이동식 화이트보드, 가습기, 파티션, 영선용 공구, SSD, HDD 등) 소모성 시제품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기계기구나 집기로 분류하여 등재 및 관리하여야 한다.</p>	제·개정(안)작성: 자산관리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신 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